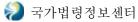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2.4.8] [대통령령 제23708호, 2012.4.6, 제정]

- 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조정중재원의 지부) ①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 조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이하 "조정중재원"이라 한다)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.
 - ② 지부의 명칭, 위치 및 관할 등 지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중재원의 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
- 제3조(조정중재원의 업무) 법 제8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 - 1.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
 - 2.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(財源) 등 자산의 관리 · 운영
 - 3.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
 - 4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
 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제4조(조정중재원의 이사)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,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(이하 "감정단"이라 한다) 의 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 - 1.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 -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명
 - 4. 기획재정부·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각 1명
- 제5조(이사회의 심의·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사업운영계획 등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4. 내부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5. 준비금 등 중요재산의 취득 ·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- 6. 차입금에 관한 사항
 - 7.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제6조(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이사회는 원장, 위원장, 단장 및 제4조에 따라 위촉한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②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,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- ③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.
- **제7조(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)**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정부출연금의 관리 등)** ① 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, 정부출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제1항의 정부출연금에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填)에 충당하고.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.
- 제9조(조정위원회의 간사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

-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**제10조(조정위원회의 회의 등)**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, 장소,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.
- **제11조(조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)** 법 제23조제7항에서 "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조정·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변호사
 - 2. 공인회계사
 - 3.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 - 4.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5. 그 밖에 원장이 조정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.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**제12조(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)**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**제13조(추천위원회의 운영)**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**제14조(감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)** 법 제26조제1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보건의료,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변호사
 - 2. 「의료법」제2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또는 간호사
 - 3. 「약사법」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
 - 4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무기록사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 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5.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 - 6.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7. 그 밖에 원장이 감정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.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감정서의 기재사항)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사건번호와 사건명
 - 2.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
 - 3. 감정대상
 - 4.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
 - 5.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
 - 6. 후유장애의 유무, 종류 및 정도
 - 7.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
 - 8. 작성일
 - 9. 관할 감정부의 명칭
 - ②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. 다만,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③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 감정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감정소견을 적되, 이에 반대하는 감정위원의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.
- **제16조(조정결정 후의 절차)**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.
 -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.

- 1. 「제조물책임법」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
- 2.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
- 3.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
- 4.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
- **제17조(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)**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.
 - 1.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
 - 2. 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
 -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부의 제시를 받고서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,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 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.
- **제18조(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)**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보상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 -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, 비상임으로 한다.
 - 1. 산부인과 전문의 2명
 - 2.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
 - 3.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
 - 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 -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[시행일: 2013.4.8] 제18조

- 제19조(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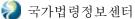
[시행일: 2013.4.8] 제19조

- 제20조(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)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(이하 이 조에서 "사건"이라 한다)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
 - 2.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 - 3.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
 - 4.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- 5.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
 - 6.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경우
 - 7.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 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
 -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[시행일: 2013.4.8] 제20조

- 제21조(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)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분 담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.
 - 1. 국가: 100분의 70
 - 2.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() 실적이 있는 자: 100분의 30





-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.
-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, 통지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.
- 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[시행일: 2013.4.8] 제21조

- 제22조(보상의 범위)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(이하 "의료사고 보상사업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 - 1.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
 - 2.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

[시행일 : 2013.4.8] 제22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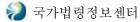
제23조(보상금의 지급기준)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
[시행일: 2013.4.8] 제23조

- 제24조(보상금의 지급절차 등) 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,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(의료사고의 피해자인 당사자만 해당한다. 이하이 조에서 "청구인"이라 한다)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
 -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물가항력 의료사고이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,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기록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정단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, 위원장은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.
 - ⑥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[시행일: 2013.4.8] 제24조

- 제25조(대불의 대상 및 범위)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, 조정비용·중 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.
 - 1.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
 - 2.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조정조서 작성일
 - 3.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집행권원 작성일. 다만,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.
- **제26조(대불의 청구)**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조서
 - 2.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조정조서
 - 3.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집행권원. 다만,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한다.
- 제27조(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)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(이하 "대불비용"이라 한다)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이를 변



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원장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.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
-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(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의 부담액 및 그 징수시기를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 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**제28조(대불금의 구상)**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건의 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(이하 "구상의무자"라 한다)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.
 - ② 원장은 제1항의 청구를 하여 구상의무자()로부터 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법 제47 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.
- 제29조(대불금의 결손처분)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
 - 1. 구상의무자의 사망.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
 - 2. 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 - 가.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에 드는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
 - 나.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금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·지방세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
 - 3.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
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
 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**제30조(조정비용 등)**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, 감정비용,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- 제31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6년 4월 8일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**제3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**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칙 <제23708호, 2012.4.6>

[시행일: 2013.4.8] 제31조

이 영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